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병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145

발의연월일 : 2024. 6. 28.

발 의 자 : 이병진・송옥주・윤후덕
임호선・박지원・이상식
이재관・한민수・안규백
이연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농지에서 내수면 양식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전용 절차를 거친 후 어업허가를 받아야 함.

현재 축사・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그 자체를 농지로 보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목적행위가 가능하나, 상대적으로 원상회복이 쉬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은 농지전용을 통해서만 목적사업이 가능한 실정임.

이에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‘농축산물 생산시설’에서 ‘농축수산물 생산시설’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나목 등).

법률 제 호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농축산물”을 “농축수산물”로 한다.

제35조제1항제1호 중 “농축산물”을 “농축수산물”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중 “농축산물”을 “농축수산물”로 한다.

제49조의2제2호 중 “농축산물”을 “농축수산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
1. “농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	1. -----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	나. ----------농축수산물----------.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35조(농지전용신고)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제35조(농지전용신고) ① ----------.
1. 농업인 주택, 어업인 주택, 농축산업용 시설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	1. ----------농축

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), 농수산물 유통·가공 시설	수산물----------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6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)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	제36조(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)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농축수산물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49조의2(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)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·구·읍·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	제49조의2(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	2. ---------- ----------농축수산물--- 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